

獨逸과 比較한 日本에 있어서의 法學敎育과 實務

José Llompart*

一. 序

「日·獨에 있어서의 法學敎育 및 法律實務」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테마이나 우선 그 前에 나는 이 테마에 관한 韓國의 實情에 대하여 아무런 知識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두고자 한다. 또한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具體的인 문제는 대체로 法律家의 養成(Juristenausbildung)일 것이라고 생각되나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그 정도의 専門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諒解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이 곳에서는 주로 西獨과의 比較를 하면서 현재 日本의 大學에서 행해지고 있는 法學敎育, 나아가 大學 및 司法研修所에서 행해지고 있는 法律家의 養成과 兩國의 法律實務에 대하여 약간의 考察을 試圖코자 하는 것이다. 이 3개의 문제를 綜合的으로 考察하는 것이 나의 애기의 목적이나 그를 위해서는 우선 日本과 西獨의 현저하게 다른 歷史的 文化的 經濟的 民族的인 相違點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時間관계상 나의 애기는 斷片的 考察에 그칠지도 모르겠으나 이 점 역시 감안하여 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二. 日·獨에 있어서의 法學敎育

1) 一般的으로 말하여 兩國에서는 法學部(法科大學)가 있는 大學에서 法學敎育이 시행되고 있으나 거기에는 현저한 相違點이 있다.

日本에는 大學數는 433, 短期大學은 518(1979年)교가 있으나 그 중에서 法學部가 있는 大學數는 65개 이상이다⁽¹⁾. 그리고 매년 法學部에 入學하는 學生數는 2萬人을 넘는다. 擔, 司法試驗의 合格者는 매년 겨우 450人이다.

또한 각 대학에는 定員(Numerus clausus)이 있고 특히 有名한 大學의 경우에는 入學이 매우 困難하나(소위 「受驗地獄」 「浪人(再修生)」 「熟」의 문제) 이는 法學部에 限定된 문제는 아니다. 日本의 高校生은 大學에 入學할 때 學部(學科)보다는 大學에 더 比重을 두는 傾向이

* Professor of Sophia University, Japan.

있으므로 法學부에 入學해서도 모두가 다 法律家나 法學者가 되고 싶은 希望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企業에서도 新入社員을 採用할 때 學部보다도 어느 大學이나를 더 重視하는 것이다.

2) 日本의 法學부에 들어간 學生은 4年동안에 法學관계의 科目 以外에 一般教育, 保健教育, 外國語科目을 履修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法學教育은 사실상 2年以上 3年以下의 것이 되고 만다. 法學부를 卒業해도 法學知識은 充分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學部에서 講義와 演習時間에 出席한 것만으로는 法律的 思考(legal mind)를 몸에 익힌다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學生의 年齡을 봐도 學業의 內容과 期間을 봐도 日本의 大學의 法學부는 美國의 Law School 또는 西獨의 juristische Fakultät와는 比較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一般的으로 인식되고 있는 事實이다.

實은 東京大學 法學부에서는 1967年 이후 數年에 걸쳐 法學教育計劃의 全面的인 再檢討가 행해지고 그 主된 目的은 法學教育期間을 1年間 延長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提案에는 反對意見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특히 1968年으로부터 1969年에 이르는 사이의 大學紛爭으로 인해 그대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 案의 目標은 科目數를 增加한다는 것이 아니라 法律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보다 많은 時間을 設置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case method도 導入한다는 提案도 包含하고 있었던 것이다.⁽²⁾

3) 獨이나 美에 比하면 日本의 法學부에 開講되고 있는 科目數는 훨씬 많고 variety가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東大 1970年度 65科目, Bonn大學 Winter-Semester 1967/68年度 40科目)에 견대, 私立인 上智大學의 法律學科(一學年定員: 200名)의 專門科目表에서는 그 數는 138개나 되고 있고 來年度(1982年度)에 實際로 開講되는 科目은 116개에 達하고 있다.⁽³⁾ 이 가운데 他大學의 教授가 非常勤講師로서 科目을 擔當하는 것도 多數있는데 이 경우 擔當者가 專門家이기 때문에 充實한 講義가 期待되고 判例나 具體的 case가 取扱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높게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日本의 法學부의 경우 必須科目의 數가 比較的 적다는 것도 特徵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上智大學의 경우는 단 6科目). 이러한 科目의 「自由化」를 어떻게 評價하여야 할까는 하나의 문제일 것이나 司法試驗을 目標로 하는 學生들을 위해 특별한 指導(guidance)제도 등을 설정함으로써 이 마이너스로 생각되는 點들을 어느 정도 補完해 가게 된다.

그러나 앞에도 말한 바와 같이 法學부의 學生의 在學期間이 너무 짧다는 것은 依然히 문제가 되고 있다.

4) 日本에서는 法學부가 있는 大學의 全體가 大學院을 設置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學部와는 달리 大學院의 在校生은 定員을 훨씬 下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은 數字만으로 行해지는 大學院教育은 相當히 程度높은 것이 되고 있다. 다만 「博士課

程]의 前期로서 修士(碩士)學位를 取得한 者는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음에 대하여 博士學位를 取得하는 者는 極히 少數이다. 또한 大學院生은 하나의 專攻에 대하여 그 分野의 工夫는 깊게 하고 있으나 넓게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點이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專門內에서의 專門化」의 문제).

5) 西獨의 法學部를 日本의 法學部와 比較하면 實은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西獨에서는 入學定員도 없고 入學試驗制度나 一般教育科目의 修得도 없다. 他大學에 轉學하고 싶은 경우에는 手續만 밟으면 끝난다. 實은 이와 같은 大學간의 交流는 學生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教授의 경우에도 많이 보인다(어느 大學에서 3年을 勤務한 教授는 他大學에서 소위 Ruf를 받은 후 그 大學으로 옮길 수가 있다). 日本에서는 이와 같은 交流는 制度的으로 困難한 것처럼 日本人의 所屬感에도 별로 合致하지 않는 때문인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日本에서는 他大學의 卒業生은 專任教授로서는 採用하지 않는다고 하는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大學조차 있으나 西獨에서는 반대로 예컨대 A大學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者는 바로 A大學의 專任教授로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이 原則이 되고 있다.

또 하나의 현저한 相違點은 西獨에서는 法學部에 入學하는 學生은 장래 法律家나 法學者가 되겠다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는 點이다. 실사 企業에 就職하는 경우라도 professional한 法律家만이 할 수 있는 業務(契約書의 作成, 法律的인 advice 등)만을 擔當하는 것이다. 西獨에서는 日本에서 처럼 學部와 獨立한 大學院制度는 없으나 20代의 젊은 나이로 博士學位를 取得한 者는 많고 實務家로서도 Doktor juris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異常스러운 것이 없는 現象이다.

6) 勿論 西獨의 法學部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講義(Vorlesung)는 日本보다도 抽象的이고 講義를 듣는 것만으로는 學生들은 legal mind를 몸에 익힌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그 때문에 소위 Arbeitsgemeinschaften, Übungen, Examenrepetitorium 등의 時間을 두고 있으나 그 數가 적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司法試驗(Staatsexamen)을 目標로 하는 學生의 大部分은 組織的으로는 大學과 관계가 없는 Repetitor 같은 곳을 통해 그 곳에서 司法試驗受驗을 위한 本格的인 工夫를 하는 것이다. 결국 受驗工夫가 大學에서 충분히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入學定員이 없기 때문에 大學을 卒業하고 나서부터 차차 akademisches Proletariat가 形成된다고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

三. 法律家の 養成

1) 日本에서는 누구라도 司法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大學의 소위 一般教育을 받고 있지 않는 者는 그에 相當하는 試驗에 合格하면 足하고 大學卒業 또는 法學部에서 條件으로 하

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누구라도 應試할 수 있는(매년 28,000명 정도가 應試한다) 反面 合格者는 아주 적은 數字에 不過한 것이 現實이다(每年 450名 정도).

合格者의 가운데에는 大學在學生도 있으나 平均年齡은 27~28세이다. 현재 合格率이 가장 높은 大學은 東京大學인데 數年前까지는 中央大學이었다.⁽⁴⁾

受驗生은 學部나 大學院의 講義단으로는 그 受驗準備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學生과 卒業生으로 조직된 씨클이나 大學에 따라서는 특별히 설치된 司法試驗의 course를 利用하여 準備에 臨하고 있다. 司法試驗은 3개의 段階로 나누어 實施된다. 제 1次 試驗은 3시간에 걸쳐 60개 정도의 質問(憲法·民法·刑法)에 답하는 形式의 短答式으로 여기에서 約 86%의 受驗生이 不合格된다.

第 2次 試驗은 論文方式으로 그 範圍는 憲法, 民法, 商法, 刑法, 訴訟法과 한 개의 選擇科目 以外에 法學以外的 科目이 첨가된다. 최후로는 口述試驗으로 여기에서 不合格되는 者는 極히 少數이다. 3名으로 構成되고 있는 「司法試驗管理委員會」와 88名의 司法試驗考査委員(그 半이 大學教授)이 司法試驗을 實施한다.

2) 司法試驗의 合格者는 2年間에 걸쳐 東京에 있는 「司法研修所」에서 철저한 法律家의 養成教育을 받는다. 「司法修習生」에는 最初와 最後의 1個月은 研修所에서 그 외의 16個月은 法院등에서 法律家로서의 최종적인 教育이 행해지고 그 후 法官, 檢事 또는 辯護士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대체로 $\frac{3}{4}$ 가량이 辯護士가 될 것을 擇한다).

3) 이 點에 대하여도 西獨에서는 根本적으로 다른 現象을 보이고 있다.

우선 西獨에서는 一個所가 아니라 各州(Land)에서 行해지고 있고 日本과 같이 中央集權的인 制度가 없다. 따라서 州에 따라 司法試驗(Staatsexamen)의 세세한 條件도 다르다. 現在 제 1 司法國家試驗에는 Bremen州를 除外하고 選擇科目으로 하는 州도 8개나 있다.

西獨에서는 第 1 司法國家試驗을 應試하는 데에는 적어도 法學部에서 3年間을 修業하여야 할 것이 條件으로 되어 있고 日本과는 달리 合格者의 定員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實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모두 合格하는 것으로 合格率은 日本에 比하여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勿論 西獨에는 司法研修所와 같은 制度는 存在하지 않고 法律家의 養成은 오로지 大學, 法院, 檢察廳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第 1 司法國家試驗과 第 2 司法國家試驗사이의 3年半의 Vorbereitungsdienst가 있다).

이상과 같이 日本은 法律의 面에서는 西獨으로부터 적지 않은 影響을 받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法學教育의 面에서도 法律家의 養成의 面에서도 別로 西獨과 共通點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事實이다. 이는 역시 兩國의 현저히 相異한 歷史性이나 國民性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 檢討할 兩國의 法律實務에 대해서도 同様이라고 생각된다.

四. 日·獨에 있어서의 法律實務

1) 周知하는 바와 같이 日本의 法律家(法官, 辯護士 등)의 數字는 西獨이나 美國에 比하면 적다고 하는 것이 特徵的이다.⁶⁵⁾ 이러한 事實의 基本적 原因은 日本이 過去부터 받아 온 儒敎의 影響(「法」보다는 「禮」)과 現在의 國民感情에서 求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日本에서는 他國에 比하여 볼 때 法律的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法院과는 別個의 곳에서 法律的이라고 하기보다 別個의 方法으로 解決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問題를 法院에까지 가지고 가서 和解가 成立하면 그 法官의 「成功」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和解가 成立하지 않을 때 「失敗」라고 하게 되고 判決에 의하여 문제를 解決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日本人의 契約과 權利에 관한 意識은 戰後 상당히 強化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지금도 法律을 嫌惡하는 傾向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西獨에서는 유럽의 다른 國家들에 比하여도 法律第1主義라고 하는 國民感情은 상당히 강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Rechtshaberei 문제).

2) 어느 國家에서라도 法律에 관한 理論(法學)과 法律에 관한 現實(法の 適用 내지 法律實務)은 같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특히 日本의 이와 같은 Law in books와 Law in action과의 사이의 간격은 아주 흥미있는 課題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法律實務의 面에서 간단히 言及해 보고자 한다.

獨逸에서도 예컨대 "das ist allgemeine Lehre in der Wissenschaft, in der Praxis wird aber nicht anerkannt"라는 것이 때때로 擧論되나 日本의 경우 法の 理論과 소위 「살아있는 법」(lebendes Recht)은 아주 別個의 것인 것처럼 보인다. 결국 法の 理論과 어느 정도까지 成文化된 法을 그대로 外國으로부터 輸入할 수는 있으나 그 法律을 適用하는 때에는 그것은 「日本化」되어 버리는 것이다. 勿論 이 現象은 自然的인 것이고 人間이 法律을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法律이 人間을 위하여 存在한다는 立場을 取한다면 이와 같은 것을 批判의 對象으로 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現象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를 意識하는 것은 必要할 것이다.

상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例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日本國 憲法은 그 內容에 있어서는 「美國製」이고 日本에 있어서의 憲法學은 특히 「獨逸製」인 Verfassungsrechtswissenschaft이나 그 解釋과 適用은 「日本製」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刑法의 경우는 理論 그 自體는 西獨의 刑法學과 區別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類似하나 그 適用의 面에서는 日本的인 要素가 數없이 보인다.

예컨대, 소위 「行政指導」(administrative guidance)라고 하는 것은 日本에 獨特한 制度로

잘 알려지고 있으나 刑法의 分野에서도 이와 類似한 指導가 行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指導가 日本의 刑法學者가 全面的으로 인정하는 「罪刑法定主義」에 合致할 수 있을가의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찌되었든 理論과 現實의 gap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은 犯罪가 적은 國家라고 하는 사실도 看過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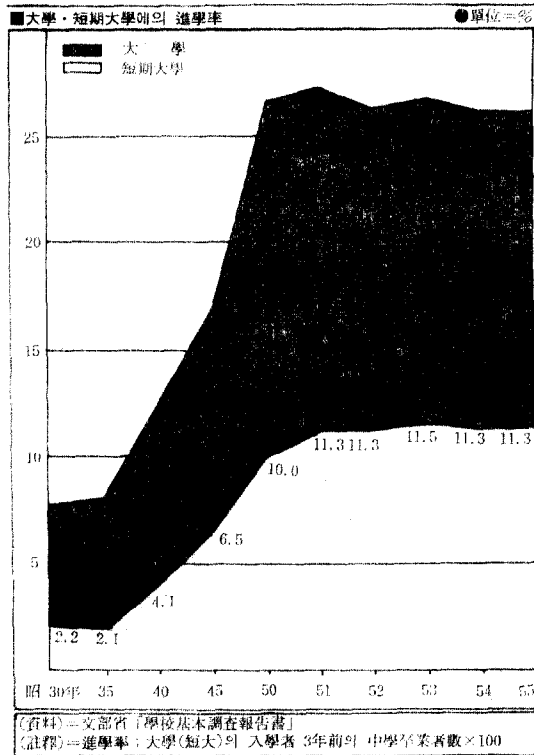
3) 西洋으로부터 受入된 思想이 法律을 통하여 日本의 社會全體에 크나큰 變化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現在까지 한번도 改正되지 않은 日本國憲法은 옛날의 天皇制와 옛날 家制度를 廢止하고 個人的 尊重과 民主主義를 實現하였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日本의 社會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西洋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法律만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옛날식으로 表現한다면 「和魂洋才」는 法律의 面에서도 그대로 實現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勿論 外國의 思想의 輸入과 새로운 法的 制度的 導入에 의해 당분간은 異質의 要素는 「融合」되지 않고 「併存」한 채로 남을 것으로 생각되나⁽⁶⁾ 時間의 경과와 함께 새로운 文化, 새로운 法的 制度 그리고 他國에서는 볼 수 없는 「살아있는 法」이 생기게 될 것이다.

어느 나라의 傳統, 國民性, 既成事實을 어느 정도 尊重하여야 할까, 或은 決斷을 내려 그들을 改革해야 할까, 그것은 case by case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4) 현재의 社會는 過去보다도 빠른 속도로 變化하기 때문에 恒常法的인 制度 및 法律家의 養成에 대하여 檢討를 加할 必要가 있긴 하나 나는 法律家의 養成의 改善에 대하여 韓國의 事情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 具體的인 提案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作業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social context를 重視함과 동시에 상당한 時間과 決斷이 必要하다고 느낀다.

또한 法律家養成의 再檢討에 있어서는 實務로부터의 要求라고 하는 觀點으로부터 생각함과 함께 大學에서 實施하는 法學教育의 面으로부터도 考察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綜合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 또는 어떠한 새로운 것을 導入하여야만 할까를 明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1) 아래와 같이 日本에서의 大學 進學率은 5年前부터 차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田中英夫『英米の司法 裁判所・法律家』(東京大學出版會 1973年), pp. 573-600(東京大學法學部の教育計劃檢討について) 參照.

(3) 上智大學 法學部 및 法學研究科

A) 法學部와 法學研究科의 科目數(1982年度)

a) 法律學科(學生定員：200名).....	138
b) 國際關係法學科(學生定員：50名).....	136
c) 法學研究科(學生定員：20名+4名).....	46
合 計	320

B) 1982年度 開講 豫定 科目數

a) 法律學科.....	116
(그 가운데 他學科 共通).....	(22)
b) 國際關係法學科.....	97
(그 가운데 他學科 共通).....	(31)
c) 法學研究科.....	33(論文指導도 포함)
(그 가운데 他專攻 共通).....	(3)
合 計：學科만	213
[法學研究科를 넣어서]	246

C) 1982年度에 開講되지 않는 科目數

a) 法律學科.....	22
(그 가운데 他學科 共通).....	(3)

b) 國際關係法學科.....	39
(그 가운데 他學科 共通)	(5)
c) 法學研究科.....	13
(그 가운데 他專攻 共通)	(0)

合 計 : 學科단 61

[法學研究科를 넣어서] 74

上智大學 1981年度 一般教育科目數(外國語와 保健體育은 제외)

A) 必須科目=人間學(各 클래스마다 하나씩 開設된다)

B) 選擇科目

a) 一般教育科目	188
b) 專門科目인데 一般教育科目으로서 인정되는 科目	69

合 計 257

備考 : 一年生數(1981年度)=2364名

全學生數(1981年度)=9906名

(4) A) The Number of Graduates of Various Universities who Passed the Legal Examination in 1975

The number in parentheses who passed while in universities.* These candidates graduate in March of the following year and enter the Institute without any gap between the two stages of their legal education.

University of Tokyo	108 (59)
Chūō University	77 (3)
Waseda University	52 (3)
Kyōto University	42 (11)
Meiji University	19 (1)
Ōsaka University	16 (2)
Hitotsubashi University	16 (1)
Tōhoku University	13 (1)
Keiō University	13 (1)
Kyūshū University	11 (5)
Ōsaka City University	11 (2)
Nagoya University	10 (2)
Kansai University	10 (0)
Hokkaidō University	9 (3)
Dōshisha University	8 (0)
Kōbe University	5 (1)
Ritsumeikan University	5 (0)
Hōsei University	5 (0)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4 (1)
Aoyama Gakuin University	4 (0)
Nihon University	4 (0)
Rikkyō University	4 (0)
Other Universities	26 (1)
Total	472 (97)

B) The numbers of the graduates of various universities who entered the Institute in 1961 are:

Chūō University (private)	106
University of Tokyo (national)	41
Kyōto University (national)	32
Waseda University (private)	19
Meiji University (private)	18
Kyūshū University (national)	17
Tohoku University (national)	12
Nippon University (private)	11
All other schools (less than 10 each)	77
Total	333

C) Data on the Japanese Bar Examination

Year	Number of Applicants	Those who Passed the Multiple Choice Type Test	Those who Passed the Final Exam.	Percentage of Success
1949	2,514	—	265	10.5%
50	2,755	—	269	9.8
51	3,648	—	272	7.5
52	4,765	—	253	5.3
53	5,141	—	224	4.4
54	5,172	—	250	4.8
55	6,306	—	264	4.2
56	6,714	—	297	4.4
57	6,920	—	286	4.1
58	7,074	—	346	4.9
59	7,819	—	319	4.1
60	8,302	—	345	4.2
61	10,921	2,092	380	3.5
62	10,802	1,931	459	4.2
63	11,725	2,030	456	3.9
64	12,728	2,017	508	4.0
65	13,681	2,258	528	3.9
66	14,867	2,225	554	3.7
67	16,460	2,244	537	3.3
68	17,727	2,322	525	3.0
69	18,453	2,326	501	2.7
70	20,160	2,157	507	2.5
71	22,336	2,821	533	2.4
72	23,425	2,407	537	2.3
73	25,259	2,484	537	2.1
74	2,6708	2,419	491	1.8
75	27,791	2,343	472	1.7

D) 1981年 司法試験合格者數

出願者數	27,816
短答式合格數	4,181
論文式合格數	486
最終合格數	446(よの内 33女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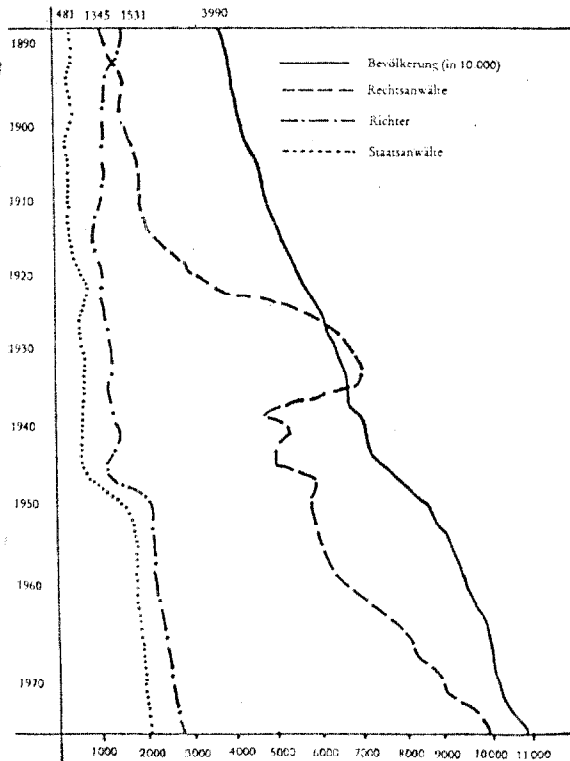
A), B), C): Taken from: *The Japanese Legal System*, Ed. By Hideo Tanaka, assisted by Malcolm D.H. Smith, University of Tokyo Press 1976, pp.572, 577, 578.

(5) A)

	a	b	a:b	c	a:c
	Bevölkerung	Richter	Verhältnis	Rechtsanwälte	Verhältnis
Japan	107 Mill.	2.688	1 : 40.000	9.921	1 : 10.000
BRD	62 Mill.	13.226	1 : 4.700	19.266	1 : 3.200

(Quelle BRD: Statistisches Jahrbuch 1974)

B) Juristen- und Bevölkerungszahlen in Japan 1890-1973 (Quelle: Shihō hakusho 1974)



A), B): Abgedruckt von: Paul Eubel u.a., *Das Japanische Rechtssystem*, Alfred Metzner Verlag, Frankfurt a.M. 1979, S.602, 603.

C) Total Number in the Legal Profession

Year	Judes ^a	Procurators ^a	Lawyers ^a	Total ^a	Total population ^b
1890 ^c	1,531	481	1,345	3,357	39,902,000
1895	1,221	385	1,589	3,195	41,557,000
1900	1,244	473	1,990	3,307	43,847,000
1905	1,179	379	2,008	3,566	46,620,000
1910	1,125	390	2,008	3,523	49,184,000
1915	898	386	2,486	3,770	52,752,000
1920	1,134	570	3,082	4,786	55,752,000
1925	1,116	564	5,673	7,353	59,179,000
1930	1,249	637	6,599	8,485	63,872,000
1935	1,391	648	7,075	9,114	68,662,000
1940	1,541	734	5,334	7,609	71,400,000
1945 ^d	1,189	658	—	—	72,200,000
1950	2,261	930	5,883	9,074	83,142,000
1955	2,327	1,000	5,994	9,321	89,837,000
1960	2,387	1,044	6,458	9,889	93,408,000

^a The number of judges, procurators, and lawyers prior to 1940 is from Shihō-shō (Ministry of Justice), Shihō Enkakushi (History of Justice) 542-46 (1939).

^b Provided this writer by the Bureau of Statistics, Prime Minister's Office.

^c Numbers and populations prior to 1910 include those in Okinawa Prefecture and Karafuto (southern Saghalien).

^d The number of lawyers in 1945 is not available.

From: *Law in Japan. The Legal Order in a Changing Society*, Ed. by Arthur Taylor von Mehren, Modern Asia Editions 1964, p. 150.

- (6) 實은 日本에서는 다른 起源의 개념인 「並存」이 있고 이것이 混同되면 法解釋의 問題도 될 수 있다. 예로서는 호세·요네팔트 「日本國憲法解釋의 問題としての 『個人의 尊重』と 『人間의 尊嚴』— 尊屬殺違憲判決을めぐって」(上)と(下), 判例タイムズ, 377號 1979年 4月 1日(上), 378號 15日(下)를 參照해서가 마람.